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. 9. 15 선고 2021가단321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 주식회사

2. 유한회사 C

변 론 종 결 2021. 9. 1.

판 결 선 고 2021. 9. 15.

주 문

1. 원고에게, 피고 B 주식회사는 10,000,000원, 피고 유한회사 C는 45,120,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21. 3. 19.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2021. 5. 3.까지, 피고 유한회사 C는 2021. 8. 4.까지 각 연 5%,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피고들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 B 주식회사에게 10,000,000원, 피고 유한회사 C에게 45,120,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바,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2. 인정 근거

가.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 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나.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C 사이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김동원